

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(컨설팅) 사업 시행 공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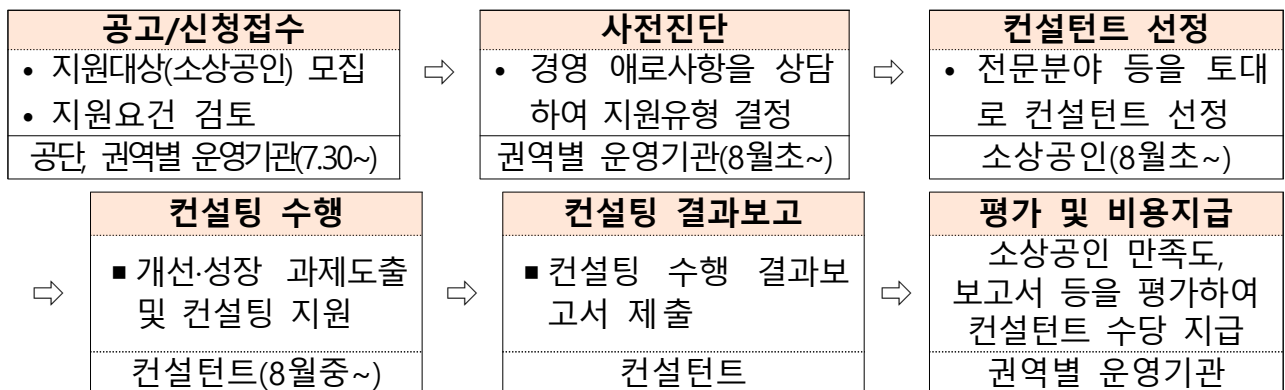
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『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』을 시행하오니,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7월 30일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

1 경영안정 컨설팅

1 사업개요

- 지원목적 :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
- 지원대상 : 소상공인
- 지원규모 : 1,300건 내외
- 지원내용 : 경영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(컨설턴트)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(최대 4회)
- 지원절차



※ 추진일정은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◆ 참고1 : 권역별 운영기관 현황

사업명	운영기관		연락처
경영안정컨설팅, 기업가형컨설팅	서울강원	한국표준협회	1533-7461
	경기인천	(사)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	1833-2866
	대전충청	로컬브릿지 사회경제연구원	044-867-9954 042-829-7907
	대구경북	(주)세종경영연구소	053-217-0852
	부산울산경남	한국생산성본부	02-3702-0779
	광주호남제주	주식회사 아이디어파트너스	070-4453-3742

2 신청 자격 및 요건

□ 지원대상 :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지원제외 :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

- '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(첨부2)
 - *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
-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-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
-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

○ 지원횟수 :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

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연 1회로 제한

□ 지원조건 : 컨설팅 비용의 90% 국비 지원, 10% 자부담

* (예시) 컨설팅 4일 기준 1,200천원(1일 300천원) 소요,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

- 단,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% 국비 지원(자부담 무료)

< 자부담 무료조건(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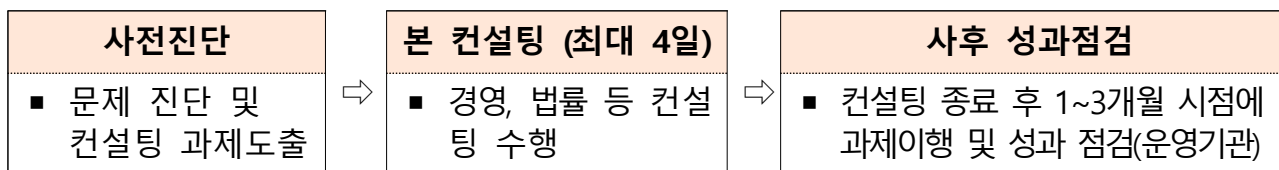
자부담 무료 조건	비고
① 간이과세자	‘첨부3’ 참조 자부담비 限
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,400만원 미만 소상공인	
③ “은행 연계 경영컨설팅” 신청 소상공인(자부담비에 한하여 은행 지원)	
④ '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	
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 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(경남 의령군) 소재 소상공인	
⑥ 환경부 지정 '일회용품 줄인가게'	
⑦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* '25년 경영안정컨설팅 신청 후 사전진단 결과 선배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	
⑧ '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(4시간 이상)	
⑨ '23~'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	

3 세부 지원내용

□ (컨설팅)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(또는 유선상담)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

○ (컨설팅 횟수) 경영상태,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

< 컨설팅 구성 >



○ (지원분야)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(컨설턴트)을 활용한 오프라인 ‘맞춤형 컨설팅’ 제공

<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>

구분	내 용		지원일수
지원업종	• 음식업, 도·소매, 서비스, 제조업, 기타		1~4일 ¹⁾ * 단기 컨설팅 1~2일
지원유형	• 기본컨설팅, 단기컨설팅, 선배멘토링, 백년소상공인 지원트랙		
지원분야	경영·마케팅	• 마케팅, 영업홍보, 프랜차이즈, 직원관리, 재무관리, 투자·펀딩, 안전·보건 관리 등 •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	
	법·세무·노무	• 특허, 법률, 세무, 노무 등	
	기술 ²⁾	• 상품 및 메뉴 개발 등	

1)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 수 및 지원분야 결정

2) '25년부터 이·미용 기술분야 컨설팅은 지원 불가(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신청·지원 가능)

- (기본컨설팅) 소상공인 현황분석, 인터뷰, 종합적인 경영개선 및 성장 과제 제시를 위한 컨설팅 지원

- (단기컨설팅) 전문 분야(법률, 노무, 세무 등)와 같이 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

* 지원예시 : 문제 확인(1회차) - 솔루션 제시·상담(2회차) 등 총 2회 방문

- (선배 멘토링)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:1 매칭하여 기술·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'멘토링' 추진

- (백년 소상공인) 백년가게, 백년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

□ (컨설턴트 매칭)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'컨설턴트 선택제'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'추천제' 방식을 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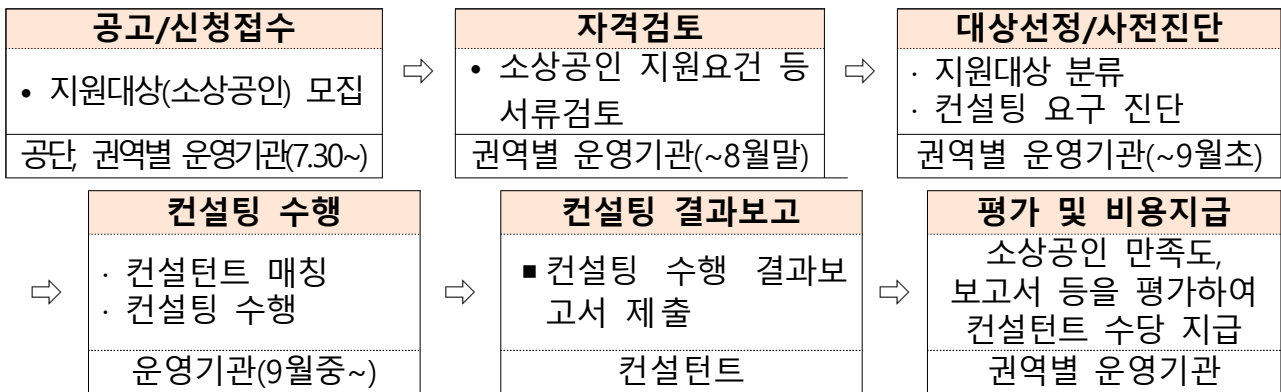
구분	내용
컨설턴트 선택제	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주요 경력, 전문분야, 보유 자격증 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
컨설턴트 추천제	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운영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(5인 이내) 중 1인 선택

2

기업가형 육성 컨설팅

1 사업개요

- 지원목적 :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, 성장·도약에 특화된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의 육성 도모
- 지원규모 : 400건 내외
- 지원내용 : 성장유형별 과업 중심의 고도화 전략 실행을 위한 ‘진단 → 전략 수립 → 실행지원’ 단계별 컨설팅 지원
- 지원절차



※ 추진일정은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2 신청 자격 및 요건

- 지원대상 : 창의적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소상공인
 -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지원제외 :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
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(첨부2)
 - *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
- 사치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
-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
-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
-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
-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□ 지원조건 : 컨설팅 비용 최대 150만원 (국비 90%), 연 1회 지원
 - 단,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% 국비 지원(자부담 무료)

< 자부담 무료조건(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) >

자부담 무료 조건	비고
① 간이과세자	'첨부3' 참조 자부담비 限
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,400만원 미만 소상공인	
③ "은행 연계 경영컨설팅" 신청 소상공인(자부담비에 한하여 은행 지원)	
④ '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	
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소상공인 육성 과제를 제시하여 선정된 기초지자체(경남 의령군) 소재 소상공인	
⑥ 환경부 지정 '일회용품 줄인가게'	
⑦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 * '25년 경영안정컨설팅 신청 후 사전진단 결과 선배 멘토링 대상으로 선정	
⑧ '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(4시간 이상)	
⑨ '23~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	

○ 지원횟수 :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

*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의 경우도 연 1회로 제한

□ 지원대상 선정 : 시행 공고 후 소상공인이 작성·제출한 신청서* 등을 바탕으로 성장전략 및 준비도(의지) 등 심사

* 기업 및 사업 아이템 소개, 성장 의지 및 향후 사업계획, 컨설팅 필요성 등을 작성

○ 권역별 운영기관이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 선정

3 세부 지원내용

- (컨설팅) 성장·도약을 위한 실행과제 수립·해결 중심의 컨설팅 제공
 - (컨설팅 횟수) 경영상태,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당 최대 5회 컨설팅 진행 가능
 - (지원분야) 소상공인 개별 성장 계획에 맞는 특화 컨설팅 제공
 - (디지털 전환형) AI 기반 고객 분석, CRM 마케팅 자동화, 무인결제 시스템 및 예약·정산 솔루션 등 디지털 기반 경영 고도화
 - (브랜드 고도화) CI·BI 리뉴얼, SNS 콘텐츠 기획, 고객 피드백 기반 운영 매뉴얼 정비 등 브랜딩 역량 강화
 - (사업 확장형) 신제품 개발, 신규 유통채널 진출, 투자유치, 다점포화 및 프랜차이즈화 등 외연 확장 전략 수립

< 컨설팅 지원분야(안) >

구분	지원분야	세부내용(예시)
디지털 전환	경영혁신	• 간편 POS 및 매장관리 시스템 도입, 고객관리 앱 활용
	디지털 전환	• AI 사업모델 피보팅, 무인·자동화, 홍보 콘텐츠 등
브랜드 고도화	브랜드 리뉴얼	• CI·BI 디자인, 브랜딩, 로컬 콘텐츠화 등
	마케팅 개선	• SNS 콘텐츠 기획, 브랜드 운영 매뉴얼 정비, 고객 피드백 반영 프로세스 구축, 매장/서비스 운영 기준 표준화
사업확장	신사업 기획	• 신제품·서비스 기획, 시제품 개발 등
	판로확대	• 온·오프라인 쇼핑몰 입점 등 신규 채널 개설, 투자·펀딩, 프랜차이즈화, 다점포화 등

* 권역별 전문기관의 컨설팅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 수 및 지원분야 확정

- (연계지원) 컨설팅 종료 후 '26년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

* 가점 부여 대상 사업은 '26년 사업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

□ 신청기간

- (경영안정 컨설팅) '25. 7. 30.(수) ~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
- (기업가형 육성 컨설팅) '25. 7. 30.(수) ~ '25. 8. 22.(금) 18:00까지

□ 신청방법 : 신청자 본인 명의로 '소상공인24'(www.sbiz.kr)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 · 접수

□ 신청서류 : 아래 공통서류 또는 해당 시 제출서류

* 시스템 내,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,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

① 공통서류

		공통서류	
사업자등록 확인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) 또는 사업자등록증 	
소상공인 확인 서류	상시 근로 자 확인	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(월별)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)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*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분만 인정 *착한 임대인세액 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불인정
		<제출방법> -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: 사업개시일로부터 공고일이 속한 달까지 제출 -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'24년도 12개월분 또는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 (예시) ① '23.9.1~현재 : '24년 12개월분 제출 ② '24.1.1~현재 : '24년 12개월분 제출 ③ '24.2.1~현재 : 공고일로부터 소급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제출	

매출 액 확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) 	<p>또는</p> <p>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</p> <p>*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분만 인정</p> <p>*착한임대인세액 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불인정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제출방법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근 1년 내역 발급분 제출 예) 사업개시일이 '24년 7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'24년 하반기 내역 제출, 사업개시일이 '24년 3월인 일반과세자의 경우, '24년 상·하반기내역 제출 - '25.1.1.이후 창업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제출 불필요 - '25.9.1.이후 신청하는 경우 '24년 하반기 및 '25년 상반기 내역 제출 	

②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제출서류

자부담 무료조건	제출서류
1. 간이과세자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2. 일반과세자 (면세사업자 포함)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,400만원 미만 소상공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아래서류 중 1부 제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,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)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*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(365일)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
3. "은행 연계 경영컨설팅" 신청 소상공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협약이 체결된 9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수협은행, 부산은행, SC제일은행</p>
4. '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사업 수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- '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
5.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중 혁신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경남 의령군 소재 소상공인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
6. 환경부 지정 '일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처 화면(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- 일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처 화면(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)
7. '25년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*권역별 운영기관의 사전진단 및 지원유형 결정에 따라 대상선정

자부담 무료조건	제출서류
8. '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 교육 수료자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- '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증(4시간 이상) * '소상공인 24'에서 발급받아 제출
9. '23~'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 기업 부문 입상기업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-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상장 사본

□ 신청 유의사항

-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 하오니 **반드시 기한을 준수해** 주시기 바랍니다.
 -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,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바랍니다.
 - 마감시한 내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, 지원유형별 선정요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(신청인 기준)는 1회만 가능함
 - '25년 상반기 경영안정 컨설팅, 창업 컨설팅,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, 수출 컨설팅 등 수혜자의 경우 신청 불가
-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(미첨부시 신청 불가),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이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
- 특수업종·분야(과제)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,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
- 신청인의 사정(병원입원, 연락두절 등)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,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(공휴일 포함) 경과 시 취소 조치함
-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 포함)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

-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 포함)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
-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,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사업비(정부보조금+자부담금) 집행은 보조금법,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(전문)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운영(전문)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,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

□ 문의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☎ 1357 또는 권역별 운영기관

사업명	권역	권역별 운영기관 연락처
경영안정컨설팅, 기업가형컨설팅	서울강원	1533-7461
	경기인천	1833-2866
	대전충청	044-867-9954 042-829-7907
	대구경북	053-217-0852
	부산울산경남	02-3702-0779
	광주호남제주	070-4453-3742

- 첨부
1.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
 2.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
 3. 신청서류별 제출요령
 4.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(신청인)

<첨부 1>

<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>

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.10.17.)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(제조업은 중분류) 기준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<첨부 2>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앞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* 다만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익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
표준산업분류	업종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신청서류별 제출요령

□ (공통서류) 소상공인 필수제출-(마이데이터 동의 시 제출 불필요)

제출서류	발급처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ps.or.kr) 또는 ☎1577-1000 연락 후 팩스 발급 요청
건강보험(월별)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내역)	
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	
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
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	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또는 ☎1588-0075(고객지원센터) 문의
소상공인확인서	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mss.go.kr) - 발급방법 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→ 온라인자료제출하기 → 제출자료 조회하기 → 신청서 작성하기 → 신청서 제출 → 확인서 출력
사업자등록증명 (최근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(사본)	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	
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	
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 증명원	

*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,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 마이데이터 수신불가

□ (추가서류)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발급처
간이과세자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일반과세자	-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-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	
“은행 연계 경영컨설팅”	- 협약이 체결된 9개 은행에서 발급한 은행추천서	추천 은행 농협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기업은행, 국민은행, 수협은행, 부산은행, SC제일은행
‘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기업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	-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수료증	‘소상공인 24’ 홈페이지 * 로그인 - 증명서 발급 - 발급신청 - 기업가형 소상공인확인서 신청
의령군 소재 소상공인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환경부 지정 ‘일회용품 줄인가게’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	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처 화면	1회용품 줄여가게 MAP 캡처 화면 (해당업체명 및 주소 확인 가능必)
‘25년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자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‘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자 (4시간 이상)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	- ‘25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현장교육 수료증	‘소상공인 24’ 홈페이지 * 로그인 - 마이페이지 - 지원사업신청 - [진행정보] - 모달창 내 [출결관리] 탭 - 우측 중간 [수료증 출력]
‘23~’25년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 부문 입상기업	- 사업자등록증명원(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	제출한 공통서류를 통해 확인 (추가 제출 불필요)
	-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상장 사본	창업진흥원

<첨부 4>

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제재기준(신청인)

구분	세 부 내 용	환수여부	참여제한 (최대범위)
주의	정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서류(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 서류 등)를 제출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	-	-
	사업추진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	-	-
	사업성과 등 추적조사, 현장점검 등에 불응한 경우	-	-
	시정 및 보완 요구에 불이행한 경우	-	-
	기타 불성실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	-	-
경고	컨설팅 관련 서류(완료보고서, 지급 요청서, 지출증빙서류, 자부담금 납부 확인서류 등)를 요구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	○	-
참여제한	경고 2회 이상 시	-	2년
	기업가형 육성 컨설팅(수출 컨설팅) 바우처 지원대상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	-	1년 (기업가형 육성/ 수출 컨설팅 등 바우처사업)
	협약 만료일까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(바우처 실행)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	○	1년
	컨설팅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요구 강요	○	2년
	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받은 경우	○	2년
	사업비의 횡령, 편취, 유용,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○	영구 배제
	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(위조, 변조, 표절, 대필 등)인 경우	○	영구 배제
	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	○	영구 배제
	기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, 규정, 협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	○	영구 배제

- 1)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 심의·조정 할 수 있다.
- 2) 주의 2회는 경고 1회로 처리
- 3) 참여제한은 '동 사업 참여제한'(참여제한)과, '중기부 및 공단 전체 사업 참여제한'(영구배제)으로 구분함